

## 조현병 환자의 선거 참여 경험

차진경\*  
(원광보건대학교)

김형준  
(신세계병원)

김학선  
(원광보건대학교)

본 연구는 조현병 환자의 선거 참여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선거에 대한 그들의 경험, 그들이 생각하는 선거 그리고 선거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고 조현병 환자의 선거권 행사와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포커스 그룹 토의와 일대일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고, 질적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과 내용 분석(contents analysis)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선거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충실히 진술할 조현병 진단을 받은 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연구 결과 4개의 범주와 13개의 주제로 분석되었으며, 각 범주와 그에 따른 주제는 다음과 같다. 범주 1은 「나만의 권한과 의무」, 하위 주제는 「인 1표의 권리」, 「당당한 국민의 한 사람」, 「포기해서는 안 되는 특권」, 「일꾼의 선출」, 「의무이기도 한 선거」로 분석되었고, 범주 2는 「가치로서의 선거」, 하위 주제는 「참여가 주는 자유의 느낌」, 「즐거운 축제」로 도출이 되었다. 또한 범주 3은 「기대감이 함께하는 선거」, 하위주제는 「삶을 향상시켜 주리라는 믿음」, 「기대하는 정치인의 기본 품성」, 「기대하는 정치인의 행보」로 분석 되었고, 범주 4는 「차별 없는 선거 참여의 바람」, 하위주제는 「공약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 「선거에 대한 기본 교육이 필요함」, 「다수의 환우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함」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로 이해하게 된 조현병 환자들은 사회적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 된다면 조현병 환자의 선거 참여는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근거로 우리사회는 조현병 환자의 사회 참여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정신보건분야의 전문가들이 대상자 옹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신사회 재활 서비스를 요구하는 바이다.

주요용어: 조현병 환자, 선거, 질적 연구, 인권, 사회참여

본 연구는 원광보건대학교 교내 연구비지원으로 수행하였음

\* 교신저자: 차진경, 원광보건대학교(jinicha@wu.ac.kr)

■ 투고일: 2013.1.8 ■ 수정일: 2013.3.6 ■ 게재확정일: 2013.3.15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민주주의에서 선거권은 모든 국민의 평등한 참여를 전제로 한다. 장애인들도 국민으로서 주권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비장애인과 동등함’ 즉 평등한 참여를 보장받아야 하고,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정도의 평등한 입장에서 사회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과, 제한 없고 자유롭고 공정한 상태의 보장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권민숙, 2008). 장애인복지법 2조 2항에서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 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병하는 장애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 별표 1에 의하면 조현병 환자의 증상에 따라 장애 등급을 1급, 2급, 3급으로 분류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 조현병은 정신분열병의 새로운 이름이며, 한자문화권에 속한 국가로 정신분열병(精神分裂病)이란 명칭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편견과 낙인으로 피해를 받아왔던 상황이었다. 이에 정신분열병 환자 가족동호회가 대한정신분열병학회에 명칭 변경을 위한 서명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논의 끝에 2010년 11월 병명 개정의 마지막 과정을 거치며 조현병으로 명칭을 개명하기로 하였다(이영문, 2012). 정신분열병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많은 이견이 있으나 현재로서 정신분열증이란 뇌의 기질적 이상은 없는 상태에서 사고, 정동,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와해를 초래하는 뇌기능 장애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민성길, 2006). 그리고 정신분열병의 진단은 DSM-VI-TR에서 망각, 환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이나 긴장증적 행동, 정서적 둔마나 무논리증 혹은 무욕증 등의 증상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정신분열증(이하: 조현병)으로 진단한다(양수 외, 2013). 만성 조현병 환자는 사회와의 오랜 단절 속에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는다(현미열 · 김정희, 2009). 조현병은 심각한 사회적 기능 장애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만성화되는 특성이 있다. 특히 대인관계 유지와 사회적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 기능 손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조현병의 치료와 재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박성원 외, 2009). 따라서 치료진들은 만성 조현병 환자들이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사회로의 재적응을 돕기 위해서 중요한 옹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김희정, 2010).

조현병 환자를 포함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옹호는 1948년의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과 UN(1991)의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보호 및 정신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원칙, 그리고 국제장애인권익조약 의장안(한국장애인총연합, 2006)과 정신보건이념(보건복지부, 2000) 등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사회적 차별도 정당하지 않고 이러한 차별은 정신장애인의 보편적인 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하였다(이용표 외, 2006). 우리나라 3,617개의 국가 법령을 분석한 결과 총 39개의 법령이 자격 제한, 근로 제한 뿐 아니라 심지어 공공장소 출입이나 승선을 거부하는 권리침해 조항 등을 포함한 조항들에서 조현병 환자의 사회적 불리함을 이야기하였다(박종익 외, 2004). 또한 조현병 환자에 대한 차별이 법으로 명백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이나 드라마, 영화, 만화 등의 다양한 매체에서 정신장애인을 폭력적이거나 엽기적인 사람으로 묘사함으로써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였다(서미경, 2007). 이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정신장애인은 사회 방위적 측면에서 격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져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강제적으로 수용되어 왔다(김창엽, 2001; 임소연, 2009). 그리고 정치참여의 가장 기본인 선거권의 보장에 대해 조현병 환자의 경우 적절한 환경이 마련되지 못해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대로 권리 실현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권민숙, 2008).

우리나라 장애인 선거권과 관련한 공직법에서 대부분의 사항들이 임의 규정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시행에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범위도 지체, 시각, 청각 등 신체적 장애인의 선거 편의 등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고려나 배려의 의도는 부족하다(권민숙, 2008).

지금까지 조현병 환자들의 사회적 차별과 관련한 선행연구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과 차별 행동에 관한 김정남과 서미경(2004)의 연구에서 일반인들이 정신장애인들에 대해 회복 불능, 무능력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스티그마의 형성과 스티그마를 효과적으로 줄이고자 한 조은영(2000)의 연구에서는 스티그마를 줄이는 조력의 일환으로 정신장애인의 권리옹호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서미경(2007)은 정신보건환경과 정신장애인의 인권에서 조현병 환자의 사회복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동네에 정신보건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정신장애인과 개인적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서미경, 2007). 이와 같이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대해 조현병 환자가 사회

적, 정치적인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과 더불어 정치참여를 위해 투표, 토론, 선거 운동, 정보 추구 차원 등에서 활발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 중에 국민의 가장 기본 권리인 선거권 행사는 일정 시기가 되면 국민 누구에게나 부여되는 권리의자 의무이다. 이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인 조현병 환자들의 선거권 행사는 차별 없이 주어지는 사회 참여 활동의 하나라고 본다. 그리고 조현병 환자의 사회 재진입을 위한 여러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선거와 관련된 정신보건분야의 정책 연구와 사회적 지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현병 환자의 참정권과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정신장애인의 선거 관련 종사자와 사회복지사의 인식도 정도를 논의한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에 관한 연구(권민숙, 2008)와 정신장애인과 기본적 인권(강희원, 2010) 등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지난 2012년 12월 11일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투표율은 총 투표자 수가 30,721,459명(75.8%)이었으나(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3), 조현병환자의 투표율에 대해서는 보고 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조현병 환자의 선거 참여 실태 조사에 앞서 조현병 환자들의 선거 참여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여 그들이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또한 그들이 생각하는 선거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선거가 어떠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선거권 행사와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의 핵심 질문은 “조현병 환자로서 선거 참여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이었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조현병 환자가 생각하는 선거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 2) 조현병 환자가 생각하는 선거의 가치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 3) 조현병 환자가 선거 행위를 통해 갖는 기대감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 4) 조현병 환자들의 선거 참여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연구방법으로는 참여자의 경험을 자세히 듣고 의미를 찾아내기에 가장 적절한 포커스 그룹 토의와 일대일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자료 수집은 포커스 그룹 토의와 일대일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 분석은 질적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과 내용 분석(contents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였다.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은 1920년대 이후 사회과학분야에서 집단 면접 방법이나 조사 도구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으로 포커스 그룹을 활용하였다(김성재, 2000). 이후 포커스 그룹을 이용한 연구는 1950년대 Merton과 Lazarsfeld 등이 국가 차원의 대규모 서베이에 이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방법으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마케팅 연구, 경영학 분야, 응용사회연구에도 활용이 되었으며 나아가 질적 연구방법으로 발전해 온 연구방법의 하나이다. 최근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은 사회과학과 보건 분야에서 기초적인 자료 수집을 위한 접근이나 결과적 보고를 위한 방법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도 하다(김성재, 2000).

포커스 그룹은 허용적이고 비위협적인 환경에서 주어진 주제에 대한 견해와 지각을 얻기 위해 주의 깊게 계획되어진 지침에 따라 인터뷰를 함으로써 여러 집단으로부터 다양하고 폭넓은 견해, 경험, 신념, 태도와 행위 등을 탐색하는데 아주 유용한 연구방법이다(김후자, 2001). 특히 포커스 그룹은 잘 모르는 주제나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자주 이용되는 질적 연구방법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김성재, 2000).

### 2. 연구 대상자 및 대상자 보호

본 연구는 2012년 4월 13일에 행해진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직후인 4월부터 5월까지 전북 K시 S병원에 입원 중이면서 부재자선거에 참여한 입원 중인 조현병 환자 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참여자는 남성 12명, 여성 7명이었고, 이들의 평균 나이는 47세로 남성 48세, 여성 45세였으며, 이들의 학력은 중졸이하 4명, 고졸 11명, 대졸이상 3명이었고, 이들은 모두 국회의원 혹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과거 경험이 2회 이상 있었다.

참여자들에게 대해서는 우선 연구의 시작을 위해 전북 S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로서 선거 경험이 있고 진료부에서 추천한 입원환자들 중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선거 경험을 말해 줄 것을 동의한 입원환자들을 모집하였다. 자료 수집을 하기에 앞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동의하는 과정을 거친 후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이때 연구의 목적과 절차 및 수집된 자료가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익명으로 처리된다는 것, 인터뷰의 전 과정을 녹음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의 이름이나 신원 정보의 보호를 위해 인터뷰를 진행할 때 참여자의 영어 이름 혹은 별칭을 사용하여 녹음하였고,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음성 파일 및 신원 정보는 안전한 장소에 잠금 보관하였다.

### 3. 자료 수집 방법

연구 진행을 위한 자료 수집은 2012년도에 4월 총선 이후부터 5월 31일까지 포커스 그룹 토의와 개인 면담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포커스 그룹 토의는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김성재 외, 2000)의 절차에 따라 질문의 원칙을 숙고하고 연구 문제를 명확히 하여 포커스 그룹 면담을 위한 질문을 구성하였다. 포커스 그룹 토의에서 사용한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선거가 무엇입니까?”, “선거에 참여한 경험은 어떠하십니까?”, “선거 참여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조현병 환자들이 선거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거 참여 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등이었고, 진행 방법은 포커스 연구방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토의는 5명씩 총 세 그룹으로 실시하였고 주 1회씩 3주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한 그룹 당 60분~90분이 소요되었다. 포커스 그룹 토의 이후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대해 그 의미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개인 면담을 실시하였고 개인 면담은 남성 2명, 여성 2명으로 하였다.

개인 면담에서도 포커스 그룹 토의와 동일한 질문으로 면담을 시작하였고, 구체적인 질문으로는 ‘어떻게 해야 더 많은 분들이 선거에 참여가 가능할까요?’, ‘조현병 환자분들이 선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등이었다.

자료 수집을 위한 포커스 집단 토의와 개인 면담의 장소는 병원의 면회실을 사용하여 외부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하였고, 병동의 면회실은 연구 진행을 하는 진행자와 참여자들만 들어올 수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독립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자료 수집 전에 참여자들의 긴장도를 낮추기 위해 간식을 준비하였으며, 포커스 집단 토의 혹은 개인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일상적인 질문을 먼저 하여 정서적 편안함을 유도하면서 시행하였다.

자료 수집 시 집단에 참여한 구성원들 간 토의가 이루어지도록 진행하였으며, 개인 면담에서는 참여자가 진술하는 개인적인 느낌과 생각에 대하여 반영적 기법과 적극적인 경청으로 참여자들이 선거에 참여한 경험의 의미를 탐사하였다. 자료 수집에서는 주진행자와 보조진행자가 함께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료는 연구 질문에 대한 토의 내용이 포화될 때까지 진행하였다. 그리고 매회의 집단 토의가 종료된 후 디브리핑 노트를 점검하면서 다음 인터뷰에 참고하여 다음 포커스그룹 토의 진행에 참고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개인 면담과 포커스 그룹 토의시 수집하였던 녹음자료를 필사한 필사본과 면담 중에 연구자가 작성한 현장 노트 및 포커스 그룹 토의와 개인 면담 직후에 작성한 디브리핑 노트의 내용이다.

#### 4.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참여자의 경험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자 상황 설명적 차원의 자료 분석 방법인 내용 분석과 주제 분석을 사용하였다. 내용 분석으로는 수집된 자료로부터 의미 있는 단어, 문장, 단락을 일차적으로 개방 코딩한 후 유사한 문장과 단락으로 모아 구분하고, 구분된 문장과 단락을 범주화하여 명명하였다(Hsieh & Shannon, 2005). 그리고 내용 분석을 위해 연구자들은 총 10회 이상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분석 과정을 진행하였다. 주제 분석은 수집된 자료로부터 서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개념을 찾아내고 개념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중심 주제를 도출해 내는 방법(Braun & Clarke, 2006)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1차적인 개방 코딩의 결과 247개의 각기 다른 의미 있는 단어와 문장이 분석되었으며, 최종 70개의 상위개념으로 분석되었다. 그런 다음 개념을 13개의 주제로 묶었으며, 최종적으로 4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각각의 범주를 명명하였다. 또한 분석 과정은 연구자들의 모임을 통하여 자료 수집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고 개념을

추출하고 범주를 명명하는 분석 과정을 재확인하면서 다양한 상황과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범주를 추가 수정하였을 뿐 아니라,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일지를 작성하여 연구의 일관성과 자료 분석의 중립성을 유지하였다.

## 5. 연구의 객관성 확보

### 가.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 수행에서 연구자들은 간호학전공자와 의학전공자로 간호학전공자의 경우 연구 책임자는 정신보건관련 기관에서 20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그 중 조현병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 관련 업무를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경험하였다. 학문적으로는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질적 연구를 수강하였고, 이 후 질적 연구 세미나에 참석을 통해 질 관리를 하였으며, 질적 연구로 학회지 게재의 경험이 여러 차례 있다. 또 다른 저자 한 명은 병원에서 환자 간호 업무를 10년간 하였고, 질적 연구 방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질적 연구로 학회지 게재의 경험이 여러 차례 있다. 그리고 다른 연구자는 정신의학 전공자로 조현병 환자에 대한 진료의 경험과 연구의 경험을 충분히 갖추었다.

### 나.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 확보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를 위한 연구 진행은 Guba와 Lincoln(1989)의 제4세대 평가 기준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Guba와 Lincoln(1989)은 평가에 적합한 타당도의 준거를 평행적 준거, 해석학적 과정의 비판, 진정성(authenticity)에 근거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평행적 준거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연구자들도 조현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며, 조현병 환자 당사자들에게 선거 행위에 참여한 경험을 질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해석학적 과정의 준거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3개의 포커스 그룹 과 4명을 개인 면담하였다. 포커스 그룹 토의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주제에 대한 토의 내용이 포화 될 때까지 그룹 토의를 진행하였고, 분석 시에도 내용과 하위주제들을 분류하여 범주화하였다. 또한 진정성의 준거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실적 가치의 확보와 진행자의 주관성 배제를 위해

집단 토의와 개인 면담이 종료된 후 매 시기마다 보조연구자와 함께 수집된 내용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포커스 그룹 토의가 끝난 후에 보조진행자가 토의 내용을 요약하여 참여자들로부터 요약의 내용들이 참여자들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받았다. 연구 참여자 중 개인 면담이 이루어진 대상자의 경우 개인 면담이 끝난 후 면담 내용을 참여자에게 요약함으로써 면담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받았으며, 분석 결과를 연구에 참여한 3명의 참여자들에게 보여 그 의미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다.

그리고 연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설계부터 연구팀들은 연구 주제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참여자 확보 시 선거에 2회 이상 참여한 대상자들을 기준으로 모집하였고, 조현병 환자들의 상태 또한 진료부와 병동의 수간호사가 본 연구 주제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자로 추천된 대상자를 선출하였다. 또한 연구 진행시에는 포커스 연구 방법의 절차를 준수하였다. 연구 진행에서는 연구 질문을 구성할 때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2인에게 연구 질문 점검을 받았으며, 포커스 그룹 토의에서의 연구 질문은 시작 질문, 도입 질문, 전환 질문 주요 질문, 마무리 질문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에 있어서는 매 집단토의 마다 질문 내용에 대한 진술이 포화 상태를 이루어질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후 개인 면담에서는 집단 토의 후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한 후 개인 면담에서 보다 세부적인 질문을 하였으며 면담의 질문은 집단 토의와 동일한 시작 질문과 주요 질문을 중심으로 면담자의 말을 쫓아가면서 개인 면담을 진행하였다. 집단 토의 진행시 보조진행자로 하여금 디브리핑 노트를 작성하게 하여 다음 그룹 토의를 위한 준비와 진행자의 태도를 점검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연구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10차례 이상 연구자 회의를 거치면서 연구 과정을 검토하면서 자료 분석의 질적 노력을 기울였다.

최종적으로 분석된 연구 결과는 현재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학원 과정에서 연구방법론을 수학하였고, 석사학위가 있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간호사에게 보여 연구의 적용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표 1. 범주 1 “나만의 권한과 의무”의 주제와 개념 내용

| 주제               | 개념         | 개념의 내용                      | 참가자 |
|------------------|------------|-----------------------------|-----|
| 1인 1표의 권리        | 1인 1표      | - 성인이라면 누구나 갖는 1인 1표의 권리    | 1   |
|                  | 주권행사       | -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권 행사의 1인 1표   | 2   |
|                  | 기권 안 됨     | - 기권하면 안 되는 1표임             | 16  |
|                  | 권리 행사      | - 권리를 행사하는 소중한 주권임          | 2   |
| 당당한<br>국민의 한사람   | 존중감        | - 정신질환의 병을 가지고 있어도 존중받는 느낌  | 2   |
|                  | 국민         | - 나도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느낌          | 1   |
|                  | 시민         | -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낌      | 14  |
|                  | 자부심        | - 선거에 참여한 자부심을 느낌           | 15  |
|                  | 인정받음       | -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인정받는 느낌      | 16  |
|                  | 현실을 나눔     | - 현실을 누군가에게 나누어질 수 있다고 느낌   | 17  |
|                  | 정치성향       | - 개인적인 정치성향 나타냈다고 봄         | 9   |
|                  | 국민         | -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선에 참여하였음       | 13  |
| 포기해서는<br>안 되는 특권 | 관심         | - 나라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었음       | 19  |
|                  | 권리확보       | - 권리를 확보하는 일임               | 1   |
|                  | 주권행사       | - 내 주권을 행사하는 일임             | 9   |
|                  | 참정권        | - 기본적으로 갖는 참정권임             | 2   |
|                  | 심판         | - 정치인을 심판할 수 있음             | 9   |
|                  | 참여         | - 민심을 물어보는 것에 참여하는 것임       | 9   |
|                  | 천부적 권리     | - 당연히 주어지는 천부적 권리임          | 18  |
|                  | 민주국가의 꽃    | - 선거는 민주국가의 꽃임              | 2   |
| 일꾼의 선출           | 특권임        | - 특권이기 때문에 욕심을 내야함          | 2   |
|                  | 리더선출       | - 리더를 뽑는 일임                 | 2   |
|                  | 대장선출       | - 지방자치제의 대장을 뽑는 일임          | 1   |
|                  | 대표자선출      | -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일임            | 6   |
|                  | 이끄는 사람     | - 국민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함    | 10  |
|                  | 우두머리       | - 우두머리, 대장을 뽑는 일이었음         | 1   |
|                  | 나를 대신하는 사람 | - 나를 대신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음 | 10  |
|                  | 큰 인물       | - 큰 인물을 뽑는 일임               | 19  |
| 의무이기도 한<br>선거    | 기본의무       | - 납세니, 국방의 의무와 같은 의무임       | 2   |
|                  | 참여         | - 나라가 돌아가려면 참여해야하는 의무임      | 5   |
|                  | 참여         | -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여김     | 14  |

## 가. 주제 1: 당당한 국민의 한 사람

참여자 중 일부는 선거라는 행위를 함으로써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선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을 존중해주고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자신이 부응해주고 참여 할 수 있게 해주는 그자체가 고마운 일이라 하였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스스로가 투표를 찍는 그것 자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인정해줘서 투표를 하는 것이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하였다고 한다. 참여자들은 그간에 다소 소외된 느낌을 가졌던 것에서 벗어나 당당한 국민의 한사람이 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자부심은 투표를 행함으로써 주권자임을 모두에게 알리고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라의 한 사람, 나라의 시민의 한 표를 얻는 것, 빠짐없이 선거권을 얻는 것. 나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참여자 1).”

“빠짐없이 투표장에 나가서 한 표를 투표하는 자부심. 자신 있게 나가서 한 표를 찍는다는 것 그것이 자신감이죠. 시민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투표 한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빠짐없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참여자 14)”

## 나. 주제 2: 1인 1표의 권리

일부 참여자들은 선거의 의미를 표현함에 있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선거는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성인이라면 누구나 1인 1표를 갖는 것을 원칙이라고 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권리라고 하였다. 또한 선거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주권이고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라고 하였으며, 1표를 행사하지 못하면 기권이 되기 때문에 기권이 되지 않도록 빠짐없이 투표를 해야 하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1인 1표를 갖는 것을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1인 1표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참여자 1).”

“빠짐없이 한 사람씩 투표해야 하는데 투표를 하지 못하면 기권이 되잖아요. 기권이 안 되게 하려면 한 사람이 빠짐없이 투표를 하게끔 하는 것, 내 자신에게 주어진 한 표를 찍어주는 것(참여자 16).”

### 다. 주제 3: 포기해서는 안 되는 특권

또한 선거는 주어진 표를 직접 행사함으로써 권리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선거의 기본은 무엇보다 참여하는 것이고 참여를 통해서 정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중요한 행위임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이러한 선거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하였으며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특권이기 때문에 욕심도 내야한다고 하였다.

“선거에 대한 기본권이 참정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심판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신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투표가 가장 중요하지요(참여자 9).”

“선거권 행사는 민주국가의 꽃이죠 그건 당연한 거죠 참정권이니까 삶의 권리 중에 하나이고 권리에 의해서 가질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참여자 2).”

### 라. 주제 4: 일꾼의 선출

그리고 참여자들은 국회의원을 선출 할 때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특색을 살려서 그 지방을 대표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것’, ‘우두머리, 대장을 뽑는 것’, ‘지도자를 뽑는 것’으로 안다고 하였다. 대통령을 선출할 때는 ‘큰 인물을 뽑는 것’으로 국민 모두가 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를 뽑아 자신을 대신하여 선택된 대표자로 일을 하는 것이며 일반 국민들은 그가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며 선거행위에 대한 의미를 표현하였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선거는 그 지역에서 가장 우두머리, 대장을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참여자 1).”

“나라의 일꾼을 뽑는 것. 기본 좋았어요, 자부심이 있었어요(참여자 15).”

“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뽑는 것 그게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 저지르지 않고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는 것...(참여자 8).”

## 다. 주제 5: 의무이기도 한 선거

선거가 참정권이라고 표현함과 동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를 행하고 그와 같이 선거도 국민이 된 도리로 의무를 강조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또한 나라가 돌아가려면 선거를 해야 한다고 하며 선거가 곧 의무라는 생각은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남들이 하니까 따라 하기보다는 선거는 국민의 하나의 의무잖아요.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해서 좋은 사람을 뽑으면 그게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니까요...(참여자 5).”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주는 것이 한 표라도 찍어주려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죠 (참여자 14).”

## 2. 범주 2: 가치로서의 선거

선거는 단순한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에게 큰 의미를 주었다. 그들은 선거에 가치를 부여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들을 표현하였다(표 2).

표 2. 범주 2 “가치로서의 선거”의 주제와 개념 내용

| 주제            | 개념   | 개념의 내용                      | 참가자 |
|---------------|------|-----------------------------|-----|
| 참여가 주는 자유의 느낌 | 자유   | - 투표가 자유롭다고 느낌              | 3   |
|               | 평등   | - 선거는 자유 평등임                | 1   |
|               | 자발성  | - 자유롭게 나가서 투표를 하고 싶음        | 10  |
| 즐거움 축제        | 특별함  | - 특별한 것임                    | 1   |
|               | 축제   | -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종의 축제로 여겼음 | 1   |
|               | 즐거움  | - 선거권 행사는 즐거워서 하는 것이라고 여김   | 4   |
|               | 당선됨  | - 내가 지지하는 사람의 당선이 나를 즐겁게 함  | 17  |
|               | 관심공유 | - 관심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여김          | 5   |

## 가. 주제 6: 참여가 주는 자유의 느낌

질병과 관련한 치유환경에 주로 놓여 있다가 선거에 참여한 것이 뜻밖의 느낌을 주었다. 물론 입원하기 전에 선거를 경험 해보기는 하였으나 병원에서 선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선거는 ‘자유 평등’이라고 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표현하였다. 또한 병원에서 실시한 부재자 투표 시에도 깨끗한 공간, 충분히 생각할 시간, 그리고 선택에 참여하는 형식이 자신이 참여하는 선거를 자유롭게 치를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병원 밖으로 나가서 선거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보다 자유로워진다고도 말함으로써 선거가 자유로움과 연결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공간도 깨끗하고, 지키시는 분들이 계시고, 환자들은 충분한 시간, 여러 가지로 선거하기로 좋았다고 생각하죠. 자유롭다는 얘기는 내가 하는 영역에 걸림돌이 없어야 되거든요(참여자 3).”

“다음부터는 이런 시설이 아니고, 나가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참여자 10).”

## 나. 주제 7: 즐거운 축제

일부 참여자에게 선거는 축제였다. 선거기간동안에는 자신들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관심을 가져주기도 하며,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마치 사람이 사는 것 같은 공동체의 느낌도 나고 즐거웠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지지한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 좋아하게 되기도 하며, 선거가 어렵기는 하지만 재미가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과거 선거는 농한기에 선거가 치러졌었다고 하며, 시골 어르신들에게 모여서 놀 수 있는 그리고 물질적 보상이 따랐던 때를 기억하면서 축제와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깨끗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깨끗한 후보가 있는 시가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선거에서 자신이 직은 후보자가 또한 후보자들에게 기대하며 자신들의 미래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기대감도 생기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선거권행사는 자유롭게 어울려서 기대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라 하였다.

“일종의 축제로 알고 있는데요...선거하는 날도 공휴일이구요. 예전에는 선거가 고무신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것이기도 했구요... 그리고 자유 평등이구요. 국민하고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참여자 1).”

“그런 깨끗한 분들이 후보로 계시면 00시가 좋아져야 되는데, 일종의 축제이지 않습니까? 선거권 행사는 즐거워서 하는 것 아니에요?(참여자 3)”

### 3. 범주 3: 희망을 안겨줄 기대감

참여자들 스스로가 선거에 참여 하였을 때 현재보다 나아질 미래를 기대하며 후보자들 중 누군가를 선택해야 할 때는 많은 고민을 하고 한 표를 행사하는 선거를 하기 때문에 뽑힌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한다는 기대감을 표현하였다(표 3).

표 3. 범주 3 “희망을 안겨줄 기대감”의 주제와 개념 내용

| 주제              | 개념      | 개념의 내용                     | 참가자 |
|-----------------|---------|----------------------------|-----|
| 삶을 향상시켜 주리라는 믿음 | 돌보는 사람  | - 나를 돌보아 줄 사람을 선출하였음       | 2   |
|                 | 자치구 발전  | - 자치구를 좋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음   | 3   |
|                 | 잘살게 함   | - 잘 먹고 잘살게 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음 | 5   |
|                 | 삶의 질 향상 |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믿음     | 6   |
|                 | 발전      | -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           | 11  |
|                 | 복지      | - 복지 혜택에 기대를 함             | 4   |
| 기대하는 정치인의 기본 품성 | 정정당당    | - 정정당당하게 할 수 있기를 희망함       | 10  |
|                 | 깨끗함     | - 깨끗한 사람이기를 희망함            | 3   |
|                 | 깨어있음    | - 깨어 있는 사람이기를 바램           | 12  |
|                 | 윤리적     | - 올바르게 정직하며, 도덕성을 갖추기를 희망함 | 8   |
|                 | 공인      | - 확실한 공인이기를 기대함            | 6   |
|                 | 모범      | -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기를 희망함        | 8   |
|                 | 수용      | - 국민의 소리를 잘 듣기를 희망함        | 10  |

표 3. 계속

| 주제           | 개념     | 개념의 내용                    | 참가자 |
|--------------|--------|---------------------------|-----|
| 기대하는 정치인의 행보 | 득      | - 나라에 득이 되기를 희망함          | 8   |
|              | 올바른 국정 | - 참다운 국정 운영이 되기를 희망함      | 10  |
|              | 올바른 세정 | - 바른 정치 활동과 행정을 해주길 희망함   | 6   |
|              | 공약준수   | - 공약을 지키기를 희망함            | 13  |
|              | 장애인 복지 | - 장애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기를 희망함 | 18  |
|              | 나라발전   | - 나라를 성공시키기를 기대함          | 18  |

### 가. 주제 8: 삶을 향상시켜 주리라는 믿음

선거에 참여한 후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뽑은 대표자가 자신들을 위해 실제적인 도움으로 그 보답을 하리라고 기대했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다른 지역들보다 구별되게 좋게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거나 복지혜택과 미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를 원하였고 나아가 나라가 더 부강해지기를 희망하였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향상되어지기를 바랐다.

“그 지역에 사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복지나 혜택과 미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면 좋겠죠(참여자 4).”

“대표자가 정치 활동이나 정치 행세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요(참여자 6).”

### 나. 주제 9: 기대하는 정치인의 기본품성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정치인은 바르고 정정당한 사람이기를 바랐다. 마음과 행동이 깨끗하기를 기대하기도 하였고, 깨어있는 사람이기를 바랐다. 항상 여러 가지 복잡한 나라살에 언제나 빠르게 그리고 세정에 맞게 따라가는 사람이기를 바라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책임 있는 사람이기를 기대하고 당선된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 섭섭한 마음도 든다고 하였다. 또한 ‘뉴스를 보면 국회의

원끼리 막 싸우고 그러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다'하는 바람도 있고 '정치도 잘하고, 자식도 군대 갔다 오고, 모범도 보이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정치인에 대한 기본적인 품성에 대해 진술하였다.

“내가 뽑는 사람이 깨끗하고 올바르고 정직하고 도덕성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라도 대국도 만들고, 경제력도 더 발전시키고 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8).”  
 “과거에서 나쁜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어야 되고, 서로 비방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자시 의견 소견만 이야기하면 되지 서로 욕하고 헐뜯고...현재 입장에서 약한 사람 입장에서 투표해야 한다고 해서 했거든요. 좋은 사람이면 싶겠다 싶어서 뽑았어요(참여자 3).”

그런가하면 일관성 있는 모습을 기대했다. 공약을 내걸 때와 달라지는 그런 사람이 아닌 처음과 끝이 늘 같은 모습일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생각하고 있었다.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되기 전이나 되고 난 뒤나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선거 당선 후에는 느그들 필요 없다 나 혼자 챙겨야겠다. 이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참여자 4).”  
 “...한 사람을 뽑아 나가서 그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꼭 뽑아만 주면 자신의 지역구를 나 몰라라 해요. 자신들이 일을 잘 했으면 해요(참여자 10).”

#### 다. 주제 10: 기대하는 정치인의 행보

선거에서 뽑힌 사람들이 국민을 위하고 특히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기를 기대하였고 정치인은 모름지기 국민을 잘살게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참여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국가에 득이 되는 행정을 펼 수 있는 사람, 공약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 나라 일을 잘하는 사람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고 성공하는 나라가 되는 데 힘을 쓰고 노력을 하는 것이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정치인에게 바라는 점이었다.

“국민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어야 해요. ...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잘 하라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잘 했으면 해요(참여자 5).”

“네... 꼭 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해야 된다고. 국민의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바른 정치활동과 행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득과 실을 따졌을 때, 득이 되는 행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 6).”

#### 4. 범주 4: 차별 없는 선거 참여의 바람

참여자들은 보다 많은 수의 조현병 환자들이 선거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면서 선거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기대하고, 더불어 선거에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정보 공유와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위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기를 희망하였고, 보다 많은 환우들이 선거에 참여 하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표 4).

표 4. 범주 4 “차별 없는 선거 참여의 바람”의 주제와 개념 내용

| 주제                 | 개념      | 개념의 내용                               | 참가자 |
|--------------------|---------|--------------------------------------|-----|
| 공약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     | 정보 공유   | - 안내 책자, TV 토론과 같은 정보의 공유가 필요함       | 1   |
|                    | 직접 정보   | - 직접 공약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 13  |
|                    | 의견 교환   | - 다른 친구들이나 환우들과 공약에 대하여 나눔           | 17  |
|                    | 공약자료집   | - 선거공약 책자의 도움을 받음                    | 16  |
| 선거에 대한 기본 교육이 필요함  | 부재자투표   | - 선거 전에 부재자 투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9   |
|                    | 선거교육    | - 선거가 무엇이며, 투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5   |
|                    | 투표의 중요성 | - 투표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먼저 있으면 함           | 10  |
| 다수의 환우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함 | 도움이 필요  | - 도우미를 고용하여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함 | 6   |
|                    | 다수참여    | - 조현병 환자들이 차별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함  | 19  |
|                    | 참여 독려   | - 부재자 투표 공지를 통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 16  |
|                    | 부작용고려   | - 약을 먹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을 고려해주시기를 희망함    | 10  |
|                    | 신뢰      | -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표현함                | 1   |

## 가. 주제 11: 공약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

공약에 대한 정보의 접근과 선관위 공무원에 대한 신뢰감을 이야기 하였는데, 먼저 공약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으로 사회와의 연계성이 일반인보다 떨어지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생각이었으며 따라서 공약에 대한 정보를 보다 원활히 얻는 것을 하나의 참여기회의 확대라고 하였다. 특히 공약은 누구를 뽑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내책자를 공급받고 공약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를 원했다.

“선거가 약간 복잡해 진 것 같은데... 도움이 필요한데, 선택할 수 있는 정보가 안내책자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이 필요해요(참여자 1).”

“병원에도 와서 공약도 말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후보자들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으면 좋겠어요(참여자 13).”

선거에 관련된 일을 하는 공무원이나 혹은 전문요원들이 함께 할 때 정신적 안정이 된다는 경험도 있었다. 공직자에게 신뢰가 가고 자신들이 제대로 잘 하고 있다는 자심감이 높아지기도 하였다.

“그 분들이 직접 안내 해 주면 상대적으로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뭔가 잘못될 가능성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참여자 5).”

“거기 나와 계시는 분들이 선거관리위원회다 하면 그 사람들이 모두 공직에 계신다는 믿음에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참여자 1).”

## 나. 주제 12: 선거에 대한 기본 교육이 필요함

정신장애인 중에는 선거를 하기에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장애인들에게 선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환기시키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선거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병원의 환우들을 위해 부재자 투표 전에 선거에 대한 교육으로 선거는 무엇인지, 투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교육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확대방안의 하나라고 하였다.

“선거하기 전에 미리 교육을 해서 더 많이 참여하게 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9).”  
“사람들 다 모아놓고 왜 투표를 하는 지, 투표가 뭔지,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 잠깐만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한 표, 한 표가 모이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참여자 10).”

### 다. 주제 13: 다수의 환우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함

부재자 투표를 실시 할 때 환우들 중에도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도우미 등을 고용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정신장애인이 선거에 참여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조현병 환자들이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무리가 없음을 이야기하였으며, 앞으로 부재자 투표를 독려 해주기를 희망하였다. 그리고 약물을 복용하는 조현병 환자들을 위해 약물 부작용으로 눈이 침침하거나 시야가 흐려 사물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환우들을 위해 글씨를 크게 쓴다던지 와 같은 배려를 통해 부재자투표가 보다 활성화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잘 못 걷거나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우미를 고용해주어서, 다들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 6).”

“부재자투표를 좀 더 활성화 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공고를 더 잘 해주어서 더 관심을 갖게.. 기회를 줘서 투표를 하게 할 수 있으면...빠짐없이 참석을 해주는 거요(참여자 16).”

“정신과 환자들이 선거하는 거요? 아무 이상 없어요(참여자 19).”

## IV. 논의

본 연구는 선거 참여에 대한 조현병 환자의 경험을 알고자 시도하였다. 연구의 참여자는 지금까지 국회의원과 대통령선거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민인권위원회 등 여러 국가단체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는 국민 전체 투표율에 대해서만 통계량을 분석하였고, 조현병

환자들의 선거 참여 실태에 대한 조사는 전무한 상황이다. 그리고 선거참여에 대한 최근의 선행 연구들 중 청소년들의 선거 참여에 대한 경험 분석(김영인, 2011)에 대한 조사 연구와 2012년 4월 11일에 실시된 19대 총선에 대한 시민사회의 선거 참여를 통해 시민사회의 다양한 선거 참여 활동과 변화를 유형별로 고찰한 탐색 연구(이소영, 2012)가 있으나 본 연구와는 비교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의 논의는 참여자들의 경험 진술에서 도출된 4개의 범주를 근거로 조현병 환자들이 경험한 선거에 대한 의미, 가치, 기대, 선거 참여의 확대방안 제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조현병 환자들의 선거참여의 당위성과 조현병 환자들의 사회참여를 원조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역할 등을 덧붙이고자 한다.

선거에 참여해 본 연구 대상자들은 선거를 “참정권”의 일부라고 여기고 있었으며, 선거에 대한 의미로서 행위에 대한 가치 즉, 1표의 권리, 특권, 선출 또한 국민의 의무라고 표현하였다. 참정권은 ‘모든 국민이 선거를 통해 국가조직과 의사형성에 참여하거나 공무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라고 한 황남기(2004)의 주장에서와 같이 선거의 의미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선거가 국민의 권리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권민숙(2008)이 주장한 것처럼 정신장애인도 예외 없이 권리의 주체로서 행사하는 참정권이라고 한 주장과 같은 의미로 이해된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이 진술한 가치로서의 선거는 “참여가 주는 자유의 느낌”이고 “즐거움 축제”라고 하였는데 그러한 가치는 선거는 자유평등이 존재하며, 특별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또한 관심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선거의 가치를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은 박성은(2012)의 ‘선거가 축제가 되기 위한 제언’이라는 논문에서 밝힌 우리나라의 선거 풍토, 제도, 관행들에 대한 논평과 우리나라의 선거문화가 지향해 나가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선행 연구로서 본 연구와는 내용의 차이가 있으나 그의 논문 서(序)에서 밝힌 주장으로 “선거는 축제다. 그 이유는 선거가 미래의 비전을 궁리하며, 지도자를 직접 선출하는 행사이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본 연구 참여자들이 선거의 가치에 두는 의미와 같이 선거를 보다 큰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박성은(2012)의 연구와 본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과 그 의미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선거의 경험으로 “희망을 안겨줄 기대감”에 대해 진술하였다. 이는 자신이 지지하는 이들을 선출하면서 후보자들에 대한 기대감 역시 큰 것으로 나타

났고, 후보자들이 가져야 할 품성과 자질 측면에서 기대하는 바를 피력하였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이 선거에 참여하였던 경험은 선거의 의미와 가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권한과 책임, 선거에 대한 기대감과 선거 참여에 대한 당연한 권리 행사로 이해된다. 참여자들이 진술한 선거 당선자에 대한 기대감은 일반 시민들이 2012년 대선을 통해 후보자들에 기대하는 의견(김상규, 2012) 이었던 깨끗한 정치나 공약의 실천, 당선자의 태도나 신념들이 선거 전·후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측면과 맥락이 같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본 연구의 주제와 유사한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미비하기 때문에 비교하여 논하기는 어렵고 더욱이 대상자의 수가 소수이기 때문에 확대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조현병 환자들의 선거를 통한 사회참여는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더 나아가서 향후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조현병 환자 스스로를 위한 권익옹호 측면을 강조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 결과의 4번째 범주인 “차별 없는 선거 참여의 바람”으로 보다 많은 조현병 환자들이 선거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였다. 이재익(2009)의 연구에 의하면 선거에 참여하는 조현병 환자의 비율은 모든 장애인들 중에서 13.6%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조현병 환자의 1년 유병률이 전인구의 0.3%(보건복지부, 2012)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현병 환자들의 참정권 확대는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와 논의를 거쳐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선거 참여가 가능한 조현병 환자의 범위에 대해서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이 조현병 환자들 대부분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5)의 선거제도 비교 분석에서 정신박약자의 선거권을 인정된 나라가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스웨덴, 캐나다, 멕시코 등 7개국에 달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권민숙(2008)의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조현병 환자의 선거권 보장은 국가가 구체적인 제도나 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재익(2009)은 조현병 환자들이 선거에 불참하는 이유들 중에는 선거 투표 전에 자신이 선출할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 본 연구 참여자들도 조현병 환자들의 선거 참여를 위해서는 공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을 원했고, 이러한 정보 제공이 많은 환우들의 참여를 위한 사전 준비라고 하였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권민숙(2008)의 국내 선관위종사자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정신장애인의 선거권에 대한 연구에서는 선관위종사자들이 사회복지 전공자들보다 정신장애인의 선거 참여에 대

해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 결국 사회적 제도만 뒷받침 된다면 조현병 환자 스스로는 환자들이 대부분이 선거 참여가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사회적 입장은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조현병 환자와 선거 참여 실태 조사,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의 진전을 통해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측면은 권민숙(2008)이 주장하였듯이 선거권은 자신의 뜻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소외계층의 의견을 정치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조현병 환자에게 있어 자신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한다는 것은 일반인에 비해 더 큰 의미로 인식될 것이라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견해는 조현병 환자들이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통해 사회 참여에 대한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며, 사회의 한 사람으로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사회 참여는 조현병 환자의 권익옹호와 정신보건의 발전을 위한 사회 인식의 변화, 당사자 스스로가 부여하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 측면에서도 요구되는 일이라 본다.

덧붙여 본 연구 결과 대상자들이 선거 참여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선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차원의 지원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부분이다. 연구에 참여한 조현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대표적인 약물의 부작용 때문 발생하는 어려움 이라든지, 장애의 한 측면에 대한 불편함과 지원을 통하여 선거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는 이재익(2009)의 연구에서 장애인들의 선거 참여 어려움이 행정적 이유 측면에서 투표장내에서 투표방법 및 투표 동선을 안내하거나 기표행위의 불편한 사항들을 자상하게 보조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논의를 지지한다. 더욱이 UN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김형식, 2008)에서 장애 문제와 장애인의 참여에서 과거 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취급을 받아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이들의 법적 역량(legal capacity)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 부분에 대해 앞으로 조현병 환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 대한 방안의 하나로 연구의 참여자들이 부재자 투표의 활성화에 대한 의견으로 제시한 조현병 환자들이 입원한 병원을 중심으로 선거기간이 되면 부재자 투표 혹은 직접 투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지와 독려의 필요를 제안해 본다.

조현병 환자들의 선거 참여 활동을 통한 사회 참여는 결국 이들의 회복과 재활을 돕는 방법 중에서도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 권익을 옹호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Anthony(1993)와 김희정(2009)은 조현병 환자들의 진정한 회복은 신체

질환으로부터의 회복의 의미와는 다르다고 정의한다. 박성원 외(2009)는 조현병 환자들에게 특히 필요한 것은 대인관계의 유지와 사회적 역할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조현병 환자에 대한 간호가 증상 관리뿐만 아니라 예방 및 재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개발하고 발전시켜가는 데 중점을 둔다고 하였다(현미열·김정희, 2009). 이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선거를 하고 난 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인정해줘서’ 또는 ‘한 표를 투표하는 자부심’을 이야기 한 것에서 조현병 환자들의 사회 참여와 진정한 회복의 답을 유추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선거 참여를 자유로움으로 표현하고 소외된 느낌에서 벗어나 당당한 국민의 한 사람이 된 것을 느낀다는 표현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다. 이는 선거에 참여한다는 행위가 그들에게는 사회적 관계의 개선이며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엿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해결하는 문제가 남은 과제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의료전문가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이 1995년 12월 30일에 제정 공포가 된 이래 벌써 18여년이 되었다. 앞으로 정신보건분야에 있는 정신사회 재활 서비스 전문가들이 해야만 하는 당위적 역할 중에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되고 그들에 대한 인식개선의 역할이 보다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보아진다. 이번 연구는 조현병 환자 당사자들의 경험을 통하여 그들이 경험한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요구하고자 한 측면들을 이해하며 조현병 환자를 포함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권리에 대한 주장들은 조현병 환자들이 선거권을 정당하게 행사 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와 사회 인식의 변화에 의해 그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질 때 차별 없이 기본권을 가진 시민이라고 인정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본 연구를 실행하는데 있어 제한점 중 하나는 연구주제와 관련한 참여자들의 진술에 있어 조현병 환자들의 병의 특성상 증상으로 인해 간혹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흐르다든지, 내용의 초점이 비껴가는 측면도 있었다. 그리고 환자들이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손 떨림, 초초해 하고, 불안함, 입 마름의 증상들이 토론에 방해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또 하나의 제한점으로는 자료 수집이 이루어진 곳은 도·농 복합도시에 있는 병원이며, 지역적으로 치우친 곳이라 참여자 선정이 제한적이며 소수의 조현병 환자들의 선거 참여 경험이기 때문에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장애인 전체로 결과를 확대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선거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을 떠올리며,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의미는 조현병 환자 당사자의 선거 경험을 통하여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거의 의미, 가치, 그들이 기대하는 바를 통해 조현병 환자들의 참정권 확보와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해야하는 중요성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조현병 환자들의 선거에 대한 경험을 밝혀냈고, 정신장애인들의 인권 옹호 차원에서 시도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사회적으로 조현병 환자를 포함한 정신장애인의 참정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신장애인의 인식개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앞으로 정신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건설적인 연구의 진전을 기대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조현병 환자의 선거 경험을 통하여 그들이 생각하는 선거의 의미, 가치, 기대감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현병 환자들의 선거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포커스 그룹 연구 방법론을 적용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전북 K시의 S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중 국회의원이거나 대통령 선거에 2회 이상 참여해 본 경험이 있으며, DSM-IV-TR 에 따라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은 대상자로 담당 주치의와 병동의 수간호사가 추천한 남성 12명, 여성 7명 총 19명이었다. 연구의 주요 질문은 “조현병 환자로서 선거 참여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 질문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 하도록 하였고 대상자의 대화 내용은 참여자들의 허락 하에 녹음하여 필사하였으며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참여자의 경험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자 상황 설명적 차원의 자료 분석 방법인 내용분석과 주제 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의 평가기준 Guba와 Lincoln(1989)에 근거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연구 결과의 적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신보건 분야에서 20년 이상 임상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1명의 정신보건간호사와 1명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에게 보여 연구의 적용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연구결과는 4개의 범주와 13개의

주제가 도출되었고, 도출된 결과를 통해 선거 참여에 대한 조현병 환자들의 선거에 대한 의미, 가치, 기대감과 다수의 조현병 환자의 선거 참여를 희망하면서 선거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이해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우리 사회는 조현병 환자의 사회 참여에 대한 기회 확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정신보건 분야에 있는 정신사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대상자 옹호를 위한 정신사회 재활 서비스를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연구 결과 조현병 환자들은 사회적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 된다면 많은 조현병 환자들의 선거 참여는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조현병 환자들의 선거 참여를 촉진하고 나아가 이들의 사회 참여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1. 조현병 환자들의 선거 참여율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2. 조현병 환자 당사자와 그들의 가족, 관련 전문가 들이 함께 선거 참여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 조현병 환자들의 선거 참여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3. 조현병 환자들의 선거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국가의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4. 조현병 환자들에게 선거가 행해지는 기간 동안 다양한 정보(후보자 공약 설명회, 선거에 대한 개념 설명, 선거를 치루는 방법 등)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5. 선거 참여를 위한 모의 연습과 같은 사회 기술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6.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차진경은 가톨릭대학교에서 간호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신장애인 및 중독자 치료 재활, 인권, 숲 치유이다.

(E-mail: jinicha@wu.ac.kr)

김형준은 원광대학교 의대에서 의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김제 신세계병원에서 진료부장으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조현병 환자, 노인성정신장애, 중독분야이다.

(E-mail: freud88@naver.com)

김학선은 중앙대학교 간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학제개편 교육정책, 인권, 암환자 간호분야이다.

(E-mail: hskim@wu.ac.kr)

## 참고문헌

- 강희원(2010). 정신장애인과 기본적 인권.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5(8), pp.5-50.
- 김상규(2012.12.16). 2012년 대선에 바란다. *일간투데이*, 13면.
- 김성재, 김후자, 이경자, 이선옥(2000).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 서울: 현문사.
- 김영인(2011). 청소년의 제 17대 대통령선거 참여경험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8(3), pp.1-26.
- 김정남, 서미경(2004).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3), pp.589-607.
- 김창엽(2001). 한국사회와 정신질환: 사회적 반응으로서의 배제. *당대비평*, 17, pp.222-242.
- 김후자(2001). *한국인의 영적 건강 속성에 관한 탐색*. 박사학위논문, 간호학과, 계명대학교, 대구.
- 김희정(2009). 정신장애로부터의 회복 의미에 관한 질적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8(4), pp.379-389.
- 김희정(2010). 정신장애인의 회복 증진을 위한회복-증진 관계 도구(Recovery-Promotion Relationship Scale, RPRS)의 타당화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9(3), pp.288-298.
- 김형식(2008). UN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의 시민적 권리. *재활복지*, 12(3), pp.143-170.
- 권민숙(2008). *정신장애인의 선거권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사회사업학과, 서남대학교, 남원.
- 민성길(2006). *최신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 보건복지부(2000). *정신보건관련 법령*.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2). *정신보건사업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 국가법령정보센터(2012.1.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서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menuId=0&tpl=&subMenu=1&nwYn=1&query=%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x=22&y=10#J4273796>에서 2012.10.30 인출.
- 박성원, 김소야자, 이연미, 곽윤경, 조혜경, 김현례(2009). 정신분열병 환자의 사회적 인지 중재에 관한 체계적 고찰. *정신간호학회지*, 18(2), pp.175-185.

- 박성은(2012). 선거와 도시정책: 선거가 축제가 되기 위한 제언. *도시문제*, 47(518), pp.17-21.
- 박종익, 이성동, 정은기, 서동우, 홍진표(2004). 대한민국 법령에 나타난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 조항 및 그 개선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3(2), pp.237-241.
- 서미경(2007). 뉴질랜드 정부의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정책에 관한 연구: 강제입원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 보호와 사회적 차별극복 정책을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7(12), pp.64-91.
- 이소영(2012). 4·11 총선과 시민사회의 선거 참여. *선거연구*, 2(2), pp.7-50.
- 양 수, 하양숙, 이경순, 이정섭, 권혜진, 이미형 외(2013). *정신건강간호학*. 서울: 현문사.
- 이영문(2012). 조현병 : 역사와 병명개정의 의미 - 정신보건법 제정전후, 국가정책변화를 사회적관점에서 조망-. 2012년도 정신간호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간호과학회 정신간호학회, 2012.6.28, 서울: 정신간호학회, pp.9-23.
- 이용표, 강상경, 김이영(2006). *정신보건의 이해와 실천패러다임*. 서울: EM커뮤니티.
- 이재익(2009). *장애인을 고려한 투표장의 건축적 접근성*. 박사학위논문, 건축공학과, 충북대학교, 청주.
- 임소연(2009). *정신장애인의 강제치료제도와 인권: 정신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한 강제입원제도의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법학과, 건국대학교, 서울시.
- 조은영(2000).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한 스티그마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사회복지학과, 연세대학교, 서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5). *외국의 선거제도 비교 분석집*.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3.02.26). 2012년 12월 19일 투표진행상황.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20121219&topMenuId=VC&secondMenuId=VCVP>에서 2013.2.26 인출.
- 한국장애인총연합(2006).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서울: 한국장애인 총연합.
- 황남기(2004). *헌법*. 서울: 도서출판 창글.
- 현미열, 김정희(2009). 일 정신요양원에 거주하는 만성정신분열병 환자의 자가간호수행과 자가간호역량 및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8(2), pp.129-136.
- Anthony, W. A. (1993). Recovery from mental illness: The guiding vision of the mental health service system in the 1990s.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16(4), pp.11-23.

- Braun, V.,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 pp.77-101.
- Guba, E. G., Lincoln, Y. S. (1989).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Newbury Park, CA: Sage.
- Hsieh, H. F., Shannon, S. E. (2005). Three approaches to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5(9), pp.1277-1288.
- UN (1991, December). *UN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es and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 (Principle 20, GA Resolution 46/119). UN General Assembly: Author.

# A Study on Schizophrenic`s Experience in Election Participation

**Cha, Jin Kyou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Kim, Hyung Jun**

(Shinsegae Hospital)

**Kim, Hack Sun**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eanings and values of voting to the schizophrenics who have participated in voting, and thereby to pave the road for them to increase the chances of social participation. The study employs qualitative methods such as focus group and one-to-one interviews and thematic analysis and content analysis. Nineteen participants of the research have both taken part in assembly and president election.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schizophrenic's experiences of election participation could be grouped into four Categories (Category 1: the perceived meanings of election by them, Category 2: the values of election placed by them, Category 3: their expectations from election, and Category 4: their wishes of no discrimination in election participation.), Each category could be further grouped into 13 Theme Clusters (Category 1: rights of one man one vote, privilege that should never be surrendered, selection of trustworthy political servants, election as duty; Category 2: belief in better life, enjoyment of freedom through participation, enjoyable festival, dignity as a whole person; Category 3: preferable characters of political candidates, expectations from politicians; Category 4: accessibility to election campaign pledges, needs for basic education on election, hope of the more patients' participation in election). This study concludes with some suggestions for those mental rehabilitation services providers to be an advocate for mental patients such as the schizophrenics.

---

**Keywords:** Schizophrenic, Election, Qualitative Research, Human Rights, Social Participation